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1-112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1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가액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자원봉사 참여자 경품 제공 가액 범위 마련(안 제16조제2호)

나. 자원봉사자증 발급 규정 신설(안 제16조의2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1. 10. 7. ~ 10. 27. (제출된 의견 없음)
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- 4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6) 제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1.11.2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호 중 “범위 안에서 기념품·상품권 등 경품”을 “범위에서 2만원 상당의 기념품·상품권 등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자원봉사자증 발급 등)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전년도 연간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 별표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②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원봉사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구 또는 수탁기관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·사용료·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별표 및 별지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# 자원봉사자증

<앞면>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<b>자원봉사자증</b>            | ( 사 진 ) |
| 성 명 : _____              |         |
| 생년월일 : _____             |         |
| 유효기간 : . . . . ~ . . . . |         |
|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<b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</b>       |         |

<뒷면>

|  |
|--|
| ※이 증은 본인만 소지할 수 있으며,<br>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.            |
|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센터<br>☎ 02-3153-8343<br>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, 1층 |

※ 규 격 : 가로 8.4cm × 세로 5.4cm

[별지 서식]

## 자원봉사자증 (재)발급신청서

|      |  |   |
|------|--|---|
| 성명   |  | (사 진)<br>3*3.5cm  |
| 생년월일 |  |   |
| 휴대전화 |  | 발급구분<br>신규 <input type="checkbox"/><br>재발급 <input type="checkbox"/> |

### 자원봉사자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자원봉사자증 발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 
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| 수집·이용 항목             | 수집·이용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유기간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
|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사진 등 | 자원봉사자증 발급을 위한 봉사 실적조회 및 발급에 필요한 인적 사항 확인 | 정보수집일로부터 3년 |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 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원봉사자증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 동의  미동의

**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증을 신청합니다.**

◎ 문의: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센터 (☎ 02-3153-8343)

※수집된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며,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성명

(서명 또는 인)

**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**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16조(자원봉사활동의 장려) 구<br/>                     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<br/>                     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<br/>                    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<br/>                     개최·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제1호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<br/>                     진과 행사진행을 위하여 필요<br/>                    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<br/>                    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<br/>                     를 위하여 행사, 사업 참여자<br/>                     에게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 기<br/>                     념품·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<br/>                    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제16조(자원봉사활동의 장려) --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 <u>범위에서 2만원<br/>                     상당의 기념품·상품권 등</u>-----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<u>제16조의2(자원봉사자증 발급 등)</u></p> <p><u>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<br/>                     록된 전년도 연간 자원봉사활동<br/>                    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<br/>                     사자에게 별표에 따른 자원봉사<br/>                     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또는<br/>                     재발급 받으려는 자원봉사자는<br/>                    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<br/>                    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</u></p> |

지한 사람에 대하여 구 또는 수  
탁기관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 
공공시설의 주차요금·사용료  
·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 또는  
규칙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16조(자원봉사활동의 장려) 2. 제1호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행사,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만원 상당의 기념품·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.
- 제16조의2(자원봉사자증 발급 등) ① 구청장은 전년도에 연간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 별표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.
  - ②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원봉사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구 또는 수탁기관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·사용료·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### 4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조현욱 (☎ 3153-8343)